|  |  |  |
| --- | --- | --- |
|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세칙> 공표에 관한 공고**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2017년 제91호<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목록 조정 및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7]34호)를 실행하고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개혁 시범사업을 촉진시키며 심사비준 절차 표준화•규범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검총국은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쇄발부하오니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각 지역은 이에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첨부 :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세칙질검총국2017년 10월 27일 첨부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세칙1. 적용대상 업무 범위간소화 심사비준 절차를 적용하는 공업제품생산허가증 발급 사항의 신청, 처리 및 사후 현상심사 관리는 이 세칙을 적용받는다.2. 적용대상 제품 범위 연삭숫돌, 사료분쇄기, 공사용 권양기, 스틸 와이어, 경소형 기중운송설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용 강재,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침목, 구명장비, 특수 노동보호용품, 전력선•전력케이블, 내화재료, 공사용 강관비계 파스너, 건축용 루핑 펠트, 위험화학품 포장물 및 용기, 자동차 제동액, 집성재, 화학비료.3. 심사비준 의거(1)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목록 조정 및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7]34호).(2)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목록 조정 및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의 관철 및 실행에 관한 질검총국의 실시의견>(국질검감[2017]317호).(3)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개혁 시범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질검총국의 통지>(국질검감함[2017]381호).(4) 기타 관련 법률•법규와 규범성 문건의 요구사항.4. 처리기구(1) 접수기구.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2) 결정기구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5. 기업의 의무사항(1) 신청인은 관련 법률•법규와 실시세칙의 요구사항을 숙지 및 이해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에 따라 증거수집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2) 신청인은 그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3) 신청인은 법률•법규에 규정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여야 한다.6. 신청(1) 신청조건① 영업집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②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과 어울리는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③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과 어울리는 생산조건 및 검측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④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과 어울리는 기술문서와 공법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⑤ 건전하고 효율적인 품질관리제도 및 책임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⑥ 제품이 국가표준, 업계표준 및 인체건강•신변안전•재산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⑦ 국가 산업정책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의 명령에 의해 탈락되었거나 투자건설이 금지된 낙후공법, 에너지 다소비, 환경오염, 자원 낭비 등 해당 사항이 있어서는 아니된다.(2) 기업의 신청방식① 신청기업은 해당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싱장감독관리부서)의 전자심사비준 시스템에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② 신청기업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싱장감독관리부서)의 행정서비스 창구를 방문하여 관련 담당자의 협조하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3) 제출서류① 기업이 신청한 제품이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대상 제품에 속하는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전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신청서>를 작성한다. 기업은 제품검사보고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품검사보고서는 동일 제품부문의 제품형식시험보고서, 제품품질검사합격보고서 또는 정부감독검사보고서일 수 있다. 제품검사보고서는 검사검측기구 공인 자격을 취득한 검사기구에 의해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품품질검사합격보고서는 관련 세칙에서 요구한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감독검사보고서는 기업이 지난 1년 동안에 이뤄진 성급 및 그 이상의 감독검사를 통과한 합격보고서이어야 한다.② 승낙서는 법정대표인/책임자가 서명하고 기업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법정대표인/책임자는 영업집조상에 기재된 법정대표인/책임자와 일치하여야 한다.③ 신청기업의 영업집조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경영범위•경영방식이 증거수집을 신청하는 제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주소지•생산주소가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고한 실제 생산주소가 영업집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공상부서가 발급한 등기증명서 또는 비안(備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 신청사항신청 가능한 생산허가 사항은 증서의 발급, 갱신, 허가 범위의 변경, 명칭 변경, 증서 재발급 등을 포함한다.① '증서의 발급'이라 함은 최초로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생산허가증 갱신 기한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증서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다시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지칭한다.② '갱신'이라 함은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생산을 계속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기업은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갱신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허가 범위의 변경'이라 함은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핵심 생산설비 및 검사설비에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생산주소를 이전하거나 생산현장을 추가하거나 생산라인을 신축하거나 제품을 추가하는 등 경우를 지칭한다.④ '명칭 변경'이라 함은 생산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기업명칭, 주소명 또는 생산주소명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한다.⑤ '증서 재발급'이라 함은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기업 생산허가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를 지칭한다.7. 접수(1) 접수 요구사항신청인은 온라인 심사비준 시스템에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전국 공업제품생산허가 증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엽업집조, 승낙서, 제품검사보고서 등 신청서류를 업로드한다. 업로드한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2) 기한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 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정이 필요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3) 접수 결과① 제출서류가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에게 <행정허가 접수증>을 발행한다.② 법에 따를 때 신청사항이 공업제품생산허가 취득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인 경우 즉시 기업에게 불접수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법에 따를 때 신청사항이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를 거절하고 기업에게 <접수 거절 결정서>를 발행하여야 한다.④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을 통해 요구에 도달할 수 있을 경우 기업에게 <행정허가 신청서류 보정 고지서>를 발행한다.8. 심사비준(1) 심사비준 요구사항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형식심사를 거쳐 제출서류가 완비되었고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는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 결정을 내리고 형식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내린다.(2) 기한접수 결정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3) 공시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허가 결정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내에 그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허가 결정을 공표하여야 한다.9. 증서의 제작 및 송달(1) 증서허가증 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구분되며 생산허가증 전자증서와 종이형 증서는 그 법률효력이 동등하다.(2) 기한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허가 결정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전자증서를 생성하여 기업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전자증서가 기업에게 전송된 시점에 증서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10. 절차의 중단허가신청이 접수된 후 행정허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생산허가 절차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한다.(1) 법에 따를 때 신청사항이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주관부서의 직권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2) 기업이 생산허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거하여 종료된 경우;(4) 기업이 생산하고자 신청한 제품이 국가에 의해 탈락되었거나 생산이 금지된 제품 목록에 수록된 경우;(5) 법에 따를 때 응당히 생산허가 절차를 중단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11. 사후 현장심사(1) 심사기한기업이 증서를 획득한 후 30일 내에 사후 현장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2) 심사를 조직하는 기관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가 사후 현장심사를 조직하고 사후 심사 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3) 심사조직심사팀은 집법(執法)원 및 심사원으로 구성되며 법에 정해진 허가 조건에 의거하여 제출서류와의 일치성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기업은 심사팀의 감독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원은 현장심사 결론에 대하여 책임진다. (4) 심사 요구사항사후 현장심사는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개혁 시범사업 가속화 추진에 관한 질검총국의 통지>(국질검감함[2017]381호)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전개한다. (5) 사후 현장심사 결과 및 처리①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개혁 시범사업 가속화 추진에 관한 질검총국의 통지>(국질검감함[2017]381호)에 첨부된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사후 현장심사 실시규범>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현장심사 합격 결론을 내리고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사후 현장심사 실시규범>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장심사 불합격 결론을 내린다. ② 현장심사 불합격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기업의 생산허가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소재지 질량기술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즉시 해당 기업에게 시정을 명하고 생산허가증 취소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사후 현장심사 결론은 지체없이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6) 취소 절차①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취소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행산허가 취소 고지서>를 작성하여 기업에게 송달함으로써 내리고자는 하는 취소 결정의 사실, 이유와 근거 및 취소 결정의 내용을 기업에게 고지하고 <생산허가증 취소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진술 또는 해명할 권리가 있음을 기업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기업의 진술 또는 해명이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기업의 의견을 연구한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생산허가증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허가증 취소 결정서>를 기업에게 송달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말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기업 소재지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생산허가증 취소 결정서>의 송달 및 집행을 담당하며 기업의 종이형 생산허가증 원본을 회수하고 성급 질량감독부서에 말소 건의를 제출한다. |  | **关于发布《工业产品生产许可证试行简化审批程序工作细则》的公告**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2017年第91号为落实《国务院关于调整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目录和试行简化审批程序的决定》（国发〔2017〕34号）,推动工业产品生产许可证试行简化审批程序改革，推进简化审批程序标准化和规范化，质检总局研究制定了《工业产品生产许可证试行简化审批程序工作细则》,现予发布，请各试行工业产品生产许可证简化审批程序的地区遵照执行。特此公告。附件：工业产品生产许可证试行简化审批程序工作细则质检总局2017年10月27日附件:工业产品生产许可证试行简化审批程序工作细则一、适用工作范围本细则适用于工业产品生产许可证试行简化审批程序核发事项的申请、办理和后置现场审查管理。二、适用产品范围砂轮、饲料粉碎机械、建筑卷扬机、钢丝绳、轻小型起重运输设备、预应力混凝土用钢材、预应力混凝土枕、救生设备、特种劳动防护用品、电线电缆、耐火材料、建筑钢管脚手架扣件、建筑防水卷材、危险化学品包装物及容器、汽车制动液、人造板、化肥。三、审批依据（一）《国务院关于调整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目录和试行简化审批程序的决定》（国发〔2017〕34号）。（二）《质检总局关于贯彻落实<国务院关于调整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目录和试行简化审批程序的决定>的实施意见》（国质检监〔2017〕317号）。（三）《质检总局关于加快推进工业产品生产许可证试行简化审批程序改革有关工作的通知》（国质检监函〔2017〕381号）。（四）其它有关法律法规和规范性文件要求。四、办理机构（一）受理机构。省级质监部门或其委托的下级质监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二）决定机构。省级质监部门或其委托的下级质监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五、企业应履行的义务（一）申请人应当理解掌握相关法律法规、实施细则要求，根据要求积极做好取证条件准备。（二）申请人应当对其申请材料真实性负责。（三）申请人应当认真履行法律法规规定的义务。六、申请（一）申请条件。1. 有营业执照。2. 有与所生产产品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3. 有与所生产产品相适应的生产条件和检测手段。4. 有与所生产产品相适应的技术文件和工艺文件。5. 有健全有效的质量管理制度和责任制度。6. 产品符合有关国家标准、行业标准以及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要求。7. 符合国家产业政策的规定，不存在国家明令淘汰和禁止投资建设的落后工艺、高耗能、污染环境、浪费资源的情况。（二）企业申请方式。1. 申请企业登录各省级质监部门或其委托的下级质监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电子审批系统进行网上申请。2. 申请企业可以携带相关材料到各省级质监部门或其委托的下级质监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行政服务窗口由相关人员协助办理。（三）申请需提交材料。1. 企业申请产品属于试行简化审批程序产品范围的，按照实际情况填写《全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申请单》。企业提交的产品检验报告作为申请单的附件。产品检验报告可以为同产品单元的产品型式试验报告、产品质量检验合格报告或接受政府监督检验的报告。产品检验报告应为具备检验检测机构资质认定资格的检验机构出具，签发日期在1年以内，产品质量检验合格报告的检验项目覆盖相关细则检验项目要求。政府监督检验报告应为企业1年内接受省级及以上监督检验合格报告。2. 承诺书需有法定代表人/负责人签字，并加盖企业公章，法定代表人/负责人应与营业执照一致。3. 申请企业营业执照处于有效期内，经营范围、经营方式应覆盖申请取证的产品，住所地址、生产地址与申请单内容一致。申报的实际生产地址，未在营业执照中体现的，应提供工商部门登记或备案证明。（四）申请事项。申请办理生产许可事项包括：发证、延续、许可范围变更、名称变更、证书补领等情形。1. 发证指企业首次提出申请生产许可、不符合生产许可证有效期延续时限的要求或证书有效期满后重新提出生产许可申请的情形。2. 延续指生产许可证有效期届满企业需要继续生产的情形，企业应当在生产许可证有效期届满30日前提出延续申请。3. 许可范围变更指在生产许可证有效期内，关键生产设备和检验设备发生变化的、生产地址迁移、增加生产场点、新建生产线、增加产品等情形。4. 名称变更指在生产许可证有效期内，企业名称、住所名称或者生产地址名称发生变化，而生产条件未发生变化的情形。5. 证书补领指在生产许可证有效期内，企业生产许可证证书因遗失或毁损而申请补领的情形。七、受理（一）受理要求。申请人登录网上审批系统，在线填报《全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申请单》，上传营业执照、承诺书、产品检验报告等申请材料。上传的书面申请材料，应当保证与在线申报内容一致。（二）时限。省级质监部门或其委托的下级质监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2个工作日内作出受理、不予受理决定，或者一次性告知需要补正的全部内容。（三）受理结果。1. 申请材料符合要求的，向企业出具《行政许可受理单》。2. 申请事项依法不需要取得工业产品生产许可的，应当即时告知企业不受理。3. 申请事项依法不属于生产许可证主管部门职权范围的，不予受理，并向企业出具《不予受理决定书》。4. 申请材料不齐全或不符合法定形式且可以通过补正达到要求的，向企业出具《行政许可申请材料补正告知书》。八、审批（一）审批要求。经形式审查，省级质监部门或其委托的下级质监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对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的许可申请，作出准予许可决定；形式审查不合格的，作出不予许可决定。（二）时限。自受理决定之日起10个工作日内作出许可决定。（三）公示。省级质监部门或其委托的下级质监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应在许可决定之日起7个工作日内完成网站公布许可决定。九、制证及送达（一）证书。许可证证书分为正本、副本，生产许可证电子证书与纸质证书具有同等法律效力。（二）时限。省级质监部门或其委托的下级质监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应在作出许可决定之日起10个工作日内生成电子证书,并推送至企业,即为证书送达。十、终止受理许可申请后，作出行政许可决定前，有下列情形之一的，省级质监部门或其委托的下级质监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作出终止办理生产许可的决定：（一）申请事项依法不属于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职权范围的；（二）企业撤回生产许可申请的；（三）法人或其他组织依法终止的；（四）企业申请生产的产品列入国家淘汰或者禁止生产产品目录的；（五）依法应当终止办理生产许可的其他情形。十一、后置现场审查（一）审查时限。应在企业获证后30日内完成后置现场审查。（二）审查组织单位。后置现场审查由省级质监部门或其委托的下级质监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组织实施并对后置现场审查工作负责。（三）审查组织。审查组由执法人员和审查人员组成，依据许可法定条件对申报材料一致性进行监督检查，企业应当予以配合，审查人员对现场审查的结论负责。（四）审查要求。后置现场审查根据《质检总局关于加快推进工业产品生产许可证试行简化审批程序改革有关工作的通知》（国质检监函〔2017〕381号）中的相关要求开展。（五）后置现场审查结果及处理。1. 符合《质检总局关于加快推进工业产品生产许可证试行简化审批程序改革有关工作的通知》（国质检监函〔2017〕381号）中《工业产品生产许可证后置现场审查实施规范》要求的，现场审查结论为合格；不符合《工业产品生产许可证后置现场审查实施规范》要求的，现场审查结论为不合格。2. 现场审查结论为不合格，需要撤销生产许可证的企业，所在地质量技术监督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应立即责令改正，并启动撤销生产许可证程序。后置现场审查结论应立即报告省级质监部门或其委托的下级质监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六）撤销程序。1. 省级质监部门或其委托的下级质监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在作出撤销决定前制发《撤销生产许可告知书》，送达企业，告知企业拟作出撤销决定的事实、理由和依据以及撤销决定内容，并告知企业在收到《撤销生产许可告知书》之日起5个工作日内有权陈述和申辩，逾期视为无意见。2. 省级质监部门或其委托的下级质监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在研究企业意见后，应在5个工作日内作出是否撤销生产许可证的决定，并向企业送达和执行《撤销生产许可决定书》，并办理注销手续。3. 企业所在地质监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向企业送达和执行《撤销生产许可证决定书》，收回企业生产许可证纸质原件，并向省级质监部门提出注销建议。　　　 　　 |